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04월 09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1년 04월 19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6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1년 04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체육과장)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2020.12.08. 공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체육회의 회장 등과의 원활한 협의 유도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본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이를 우리군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함.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 사용 제한사항 완화

나. 주요내용

-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요건 변경(제4조 제1항 ~ 제4항)
 -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의장 변경 : 부군수 ⇒ 군수
- 당연직 위원 변경 : 군 체육회 사무국장 ⇒ 군체육회 회장

○ 기금의 사용 제한사항 완화(제15조)

-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 ⇒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진)

- 본 조례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이 ‘20년 개정 되었고 제5조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하고, 지방체육회의 의장을 위원으로

포함하며, 또한, 체육진흥기금 사용 총액 한도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이상,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따른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 이내”를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군수”를 “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무국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심의형의결”을 “심회의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20”을 “40”으로 하고, “없으며 조성목표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를 “없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의장은 <u>부군수</u>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당연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교육청 체육담당 장학사, 군 체육회 <u>사무국장</u>, 읍·면 체육회장</p> <p>2. (생략)</p> <p>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u>담당</u>이 된다.</p> <p>제8조(회의) ① (생략)</p> <p>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u>심의형의결</u>할 수 있다.</p> <p>제15조(기금의 사용) ①·② (생략)</p>	<p>제4조(구성) ① ----- ----- <u>7명</u> 이상 <u>15명</u> 이하-----.</p> <p>② ----- <u>군수</u>-----.</p> <p>③ ----- -----.</p> <p>1. ----- ----- ----- <u>회장</u>----- -----</p> <p>2. (현행과 같음)</p> <p>④ ----- ----- ----- <u>팀장</u>-----.</p> <p>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심의의결</u>----- -----.</p> <p>제15조(기금의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p>

③ 기금 사업비는 해당 연도 기
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
여 집행할 수 없으며 조성목표
액의 100분의 80은 보존하여야
한다.

③ -----
----- 40-----
----- 없다.